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29호 2023. 9. 13.(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807호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808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
거창군 조례 제2809호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 · 10	
거창군 조례 제2810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거창군 조례 제2811호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21
거창군 조례 제2812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23
거창군 조례 제2813호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27
거창군 조례 제2814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74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9
---------------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09호	농어촌도로[가조 학산(310호선), 남상 한산(207호선)] 노선지정, 군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42
거창군 고시 제2023-110호	농어촌도로(소곡선) 노선지정,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7
거창군 고시 제2023-112호	도로명주소 고시	49
거창군 고시 제2023-113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50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339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52

거창군 공고 제2023-1344호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55

거창군 공고 제2023-1356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3

거창군 공고 제2023-1359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72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9 2023년도 제2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82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9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807호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정산서
4. 지출결의서
5. 방법일지
6.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거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00
----------	----------

제출 연월일	2024. 8.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함

나. 위임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조)

1)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원중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11.~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9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808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
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3. 화재보험료 등 주택관리비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의 종류·상태의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관사 운영비)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용, 공작물·구축물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p> <p>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p> <p>3. 전기·전화·상하수도 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p> <p>4. 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p> <p>5. 공동주택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p> <p>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1급·2급 관사에 한한다)</p> <p>7. 주차비,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p>	<p>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p> <p>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p> <p>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p> <p>3. 화재보험료 등 주택관리비</p>
<p>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3, 정리구분은 별표 4와 같다.</p>	<p>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의 종류·상태의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p> <p>②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p>

[별표 3]

물품의 종류·상태 구분(제55조 관련)

1. 물품의 종류

가. 비소모품

- 1)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2)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나. 소모품

-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나.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다.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01
----------	----------

제출 연월일	2023. 8.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부담 기준을 강화하고 물품 운영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사 운영비 정비(안 제48조)

- 1) 원칙: 사용자부담(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포함)
- 2) 예외적으로 예산지출: 보수비,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주택관리비

나. 물품의 구분 정비(안 제55조, 별표 3)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물품 관리기준 변경사항 반영
 - 가) 소모품 기준에 취득단가 변경: 1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나) 용어 및 문장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58조, 제9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6.~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9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809호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사업
2.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5.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68	제출연월일	2023. 9. 12.
		제 출 자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이유

현행 고독사 예방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그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예방,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바.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8. 8.~8. 14.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9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810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군수는 탄소저감 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세대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차 없는 날 등 운영) 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차량 운행 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군수는 기후변화가 사회·자연환경, 시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25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군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부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현황 및 실업자 지원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u>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u>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 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u>제18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u> 군수는 탄소저감 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세대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u>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u> ①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u>제20조(차 없는 날 등 운영)</u> 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차량 운행 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없는 날 및 차없는 거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24조(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군수는 기후변화가 사회·자연환경, 시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

가해야 한다.

<신 설> 제25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신 설> 제2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군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27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부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현황 및 실업자 지원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70
----------	---------

발의일자	2023. 9. 12.
발 의 자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이유

급격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각종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을 정함(안 제17조)
- 나.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정함(안 제18조)
- 다. 녹색교통 활성화, 차 없는 날 운영,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정함(안 제19조~제21조)
- 라. 탄소흡수원 등 확대,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을 정함(안 제22조·제23조)
- 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정함(안 제24조~제26조)
- 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8. 8.~8. 14.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9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811호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8962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거창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거창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예비군 수송을 위해 거창군에서 훈련장까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은 거창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69
----------	---------

발의일자	2023. 9. 12.
발 의 자	신중양,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이유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의 편익을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 사용되는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라.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근거를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8. 8.~8. 14.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9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812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하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3(공사의 분리 발주)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u>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군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하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조의3(공사의 분리 발주)</u>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발주할 수 있다.</p>
<p><u>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02
----------	----------

제출 연월일	2023. 8.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공공분야 건설경기 동반 하락과 관내 및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건설업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공사의 분리 발주 신설함(안 제3조의3)
-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함(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1.~8.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9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813호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
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별표 2 제2호에 따르고 그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71	발의일자	2023. 9. 12.
		발 의 자	신중양,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 시행)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11.~8.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9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814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설치·관리에 관하여”를 “설치·관리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등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 제1호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u>설치·관리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p> <p>제8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그 밖에 주민협약회의의 <u>운영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 1. <u>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u> 2. <u>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u>설치·관리에</u>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p> <p>제8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주민협약회의의 <u>운영 등에</u>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광고물등에 대하여는</u>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u>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등</u> 2. <u>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u> 3. <u>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u></p>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삭 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

배를 적용한다.

- 아.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의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 자.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 차.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차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타.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 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03
----------	----------

제출 연월일	2024. 8.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함(안 제5조의3·제8조)

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함(안 별표 2)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횡수별 차등부과
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 개선함(안 제26조)

- 1)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조례 개선권고사항 반영
- 2)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생략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7조·제20조
- 2)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5조, 별표 5, 별표 8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6.~7.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9월 13일

거창군 규칙 제1374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65
----------	---------

제출연월일	2023. 8. 17.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정비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정비(안 별지 제31호서식)

- 1) 관리전환·무상양여를 필요로 하는 ⇒ 관리전환·무상양여의 조건
- 2) 인수자 ⇒ 인계자
- 3) 인수관서의 장 ⇒ 인계관서의 장
- 4) 물품관리원 ⇒ 물품출납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95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9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6.~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도로[가조 학산(310호선), 남상 한산(207호선)] 노선지정, 군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가조면 기리 일원 「가조 학산(310호선) 확포장공사」 등 2건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거 창 군 수

1.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가조	농도	광성선	310호선	가조면 기리 1158-5번지	가조면 기리 1419-7번지	0.715	-	6.5	6.5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남상	리도	한산선	207호선	남상면대산리 281-2번지	남상면대산리 353-4번지	0.638	-	6.5	6.5	

2. 군관리계획 결정(신설) 내용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554	6.5	국지 도로	715	중로 2-58호선	가조면 기리 1423-1	일반 도로	-	-	농도 310호선
신설	소로	3	555	6.5	국지 도로	638	중로 3-16호선	남상면 대산리 353-4번지	일반 도로	-	-	리도 207호선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소로 3-55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 폭원 : 6.5m - 연장 : 715.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조면 기리 일원 학산 농어촌도로(농도310호선)로서 일부 구간 노폭(3~4m)이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운행시 불편을 초래하여 군관리계획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기 개설구간을 포함하여 군 계획시설(도로)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신설	소로 3-55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 폭원 : 6.5m - 연장 : 638.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 및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노선을 신설 계획함.

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가조면 기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사업기간
			시설개요	면적 (㎡)	시점	종점	
교통시설 (도로)	가조 학산 (310호선) 확포장공사	가조면 기리 1158-5번지 일원	• 도로 확포장 - L=715.0m, B=6.5m	6,240	중로2-58	가조면 기 리 1423-1번지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18개월
교통시설 (도로)	남상 학산 (207호선) 확포장공사	남상면 대산리 281-2지 일원	• 도로 확포장 - L=638.0m, B=6.5m	5,768	중로3-16	남상면 대산리 353-4번지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18개월

2) 사업의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4.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계재 생략)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가조 학산(310호선) 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명	권리자	
합계				26,984	7,663					
1	가조면 기 리	1158-5	도	107	29	거창군				
2	가조면 기 리	1162	답	510	1	경상남도				
3	가조면 기 리	1164-1	답	35	35	거창군				
4	가조면 기 리	1200	도	1,859	1,295	국 (농림축산식품부)				
5	가조면 기 리	1199	구	720	671	국 (농림축산식품부)				
6	가조면 기 리	1165-1	답	46	46	거창군				
7	가조면 기 리	1556	구	3,876	137	국 (농림축산식품부)				
8	가조면 기 리	1166-1	답	22	22	거창군				
9	가조면 기 리	1167-1	답	67	67	거창군				
10	가조면 기 리	1190-3	답	73	73	거창군				
11	가조면 기 리	1191-1	답	51	51	거창군				
12	가조면 기 리	1192-1	답	70	70	거창군				
13	가조면 기 리	1194-16	답	56	56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명	권리자	
14	가조면 기 리	1194-17	답	1	1	거창군				
15	가조면 기 리	1194-18	답	5	5	거창군				
16	가조면 기 리	1194-19	답	19	19	거창군				
17	가조면 기 리	1194-20	답	35	35	거창군				
18	가조면 기 리	1194-21	답	66	66	거창군				
19	가조면 기 리	1194-22	답	76	76	거창군				
20	가조면 기 리	1194-23	답	39	39	거창군				
21	가조면 기 리	1194-24	답	20	20	거창군				
22	가조면 기 리	1194-25	답	32	32	거창군				
23	가조면 기 리	1194-26	답	53	53	거창군				
24	가조면 기 리	1194-27	답	26	26	거창군				
25	가조면 기 리	1194-28	답	23	23	거창군				
26	가조면 기 리	1194-29	답	43	43	거창군				
27	가조면 기 리	1194-30	답	106	106	거창군				
28	가조면 기 리	1221	임	998	184	거창군				
29	가조면 기 리	1582	도	4,205	729	국 (국토교통부)				
30	가조면 기 리	1218	임	586	586	거창군				
31	가조면 기 리	1218-1	도	400	400	거창군				
32	가조면 기 리	1583	도	4,661	1	국 (국토교통부)				
33	가조면 기 리	1556-2	구	5,513	244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가조면 기 리	1218-3	도	96	96	거창군				
35	가조면 기 리	1214-1	도	13	13	거창군				
36	가조면 기 리	1214-2	답	66	66	거창군				
37	가조면 기 리	1213-5	도	6	6	거창군				
38	가조면 기 리	1213-7	답	90	90	거창군				
39	가조면 기 리	1213-6	답	49	49	거창군				
40	가조면 기 리	1213-1	도	33	33	이*화 외 1인				미등기
41	가조면 기 리	1217-2	답	42	42	거창군				
42	가조면 기 리	1213-4	도	9	9	거창군				
43	가조면 기 리	1217-1	도	7	7	거창군				
44	가조면 기 리	1216-1	도	133	133	이*희	석강리			미등기
45	가조면 기 리	1216-2	묘	73	73	이*희	석강리			미등기
46	가조면 기 리	1216-3	묘	105	105	이*희	석강리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명	권리자	
47	가조면 기 리	1425	답	30	30	거창군				
48	가조면 기 리	1215-3	도	5	5	유*구				미등기
49	가조면 기 리	1215-1	구	167	4	유*구				미등기
50	가조면 기 리	1215-4	도	10	10	거창군				
51	가조면 기 리	1215-6	답	4	4	거창군				
52	가조면 기 리	1423	답	872	872	거창군				
53	가조면 기 리	1400-4	도	44	44	거창군				
54	가조면 기 리	1423-1	답	295	295	거창군				
55	가조면 기 리	1422-1	도	116	116	이*준				미등기
56	가조면 기 리	1421-2	도	10	10	거창군				
57	가조면 기 리	1419-5	도	123	123	거창군				
58	가조면 기 리	1419-7	도	187	187	거창군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사[남상 한산(207호선) 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명	권리자	
합 계				69,297	5,768					
1	남상면 대산리	281-2	도	267	226	거창군				
2	남상면 대산리	281-6	전	30	30	김*임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25			
3	남상면 대산리	281-4	전	198	198	김*임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382			
4	남상면 대산리	282-2	도	251	3	한*석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82-2			
5	남상면 대산리	282-3	대	261	19	한*석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82-2			
6	남상면 대산리	1488	도	1,098	797	국 (건설부)				
7	남상면 대산리	331-1	도	251	169	거창군				
8	남상면 대산리	329	전	840	31	최*학	경남 거창군 남상면 한산1길 25			
9	남상면 대산리	322	과	1,024	206	최*학	경남 거창군 남상면 한산1길 25			
10	남상면 대산리	322-1	대	568	59	장*정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78			
11	남상면 대산리	330-2	도	60	60	거창군				
12	남상면 대산리	330-5	답	6,243	498	김*영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3가 43			
13	남상면 대산리	322-2	임	894	78	김*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46-2, 215동 603호(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14	남상면 대산리	415-2	도	271	64	김*현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1길 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명	권리자	
15	남상면 대산리	415-3	전	221	221	김*현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1길 12			
16	남상면 대산리	330-4	과	3,392	406	김*현	거창읍 대동리 88-90			
17	남상면 대산리	416-2	도	149	109	거창군				
18	남상면 대산리	319-2	도	86	38	거창군				
19	남상면 대산리	318-2	도	36	15	거창군				
20	남상면 대산리	316-3	도	179	9	거창군				
21	남상면 대산리	316-4	답	79	79	김*환				
22	남상면 대산리	1467-92	천	12,618	1066	국 (환경부)				
23	남상면 대산리	352-2	천	101	101	거창군				
24	남상면 대산리	353-2	도	33	33	거창군				
25	남상면 대산리	353-6	천	28	28	거창군				
26	남상면 대산리	354-1	천	339	183	거창군				
27	남상면 대산리	353-7	천	143	120	거창군				
28	남상면 대산리	352-1	천	124	64	거창군				
29	남상면 대산리	352	답	1,788	128	김*울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21			
30	남상면 대산리	353-1	답	1,070	100	김*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121동 603호(풍호동,우성아파트)			
31	남상면 대산리	353-5	천	133	133	거창군				
32	남상면 대산리	344	임	33,931	21	김*성	거울 동대문구 제기2동 122-227			
33	남상면 대산리	353-3	답	2,343	282	김*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1102호(하나로3차아파트)			
34	남상면 대산리	354	답	187	169	김*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1102호(하나로3차아파트)			
35	남상면 대산리	353-4	도	61	25	거창군				

농어촌도로[소곡선(309호선)] 노선지정,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일원 「장백교(농어촌도로 309호선)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거창군수

1.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마리	농도	소곡선	309호선	마리면하고리 804번지	마리면영승리 455-4번지	0.137	-	10.2 ~12.3	10.2 ~12.3	장백교 재가설 공사

2. 군관리계획 결정(신설) 내용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66	10.2~12.3	국지 도로	137	중로 3-20호선	마리면 영승리 455-4	일반 도로	-	-	농도 309호선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중로 3-6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 폭원 : 10.2~12.3m - 연장 : 137.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백교(농도309호선)의 노후화로 홍수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주민통행에 위험이 있어, 장백교를 재가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군계획시설(도로)를 결정하고자 함.

4.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계재 생략)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명	권리자	
합 계				317,588	5,013					
1	마리면 영승리	454-4	답	1,506	1,506	경상남도				
2	마리면 영승리	455-2	구	26	26	정기영				
3	마리면 영승리	455-4	답	395	395	경상남도				
4	마리면 영승리	479-5	답	5	5	경상남도				
5	마리면 영승리	1315-24	천	269,977	987	국(환경부)				
6	마리면 하고리	71-3	도	4,688	53	국(건설부)				
7	마리면 하고리	603	답	124	124	경상남도				
8	마리면 하고리	603-2	도	1,197	751	국(건설부)				
9	마리면 하고리	604-2	답	34	34	경상남도				
10	마리면 하고리	803	천	37,005	517	국(환경부)				
11	마리면 하고리	804	도	2,631	615	국(건설부)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1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959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9. 13.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9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가북면	변경 전	개금길	가북면 용암리 277 (개금길 207)	-	도면참조	0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개금길	가북면 용암리 277 (개금길 207-1)	가북면 용암리 19-1 (개금길 207-68)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위성사진 중첩)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청에서 시행하는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1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 다. 사업면적 : 91,220㎡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
- 나. 토지 및 물건 조서 : 붙임 참조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전략담당관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편입토지 등 확인 가능함.
- 다. 열람내용 :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3.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09. 11. ~ 2023. 09. 25.(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략담당관실 (☎ 055-940-3703)

- 보상사무소: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길 13-6, 2층(국토보상원)(☎ 055-756-4440)

다.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별 계좌로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절차를 통해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나. 감정평가법인 추천: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6.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사무소(국토보상원, ☎ 055-756-4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1344호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년 9 월 11 일

거창군수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정함(안 제2조)
-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지원신청을 정함(안 제4조)
-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5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를 정함(안 제6조)

3. 붙임 : 제정 조례(규칙)안

4. 입법예고기간 : 2023. 9. 11. ~ 10. 1.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 우편번호: 50142, 전화: 055-940-8337, 팩스: 055-940-8309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거창군민
2. 예방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이나 제6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기관 등은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생략)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4) (생략)
나.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1)~27) (생략)	1)~33) (생략)
마. 국민건강증진 사업	1)~5) (생략)	1)~6) (생략)
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1)~5) (생략)	1)~3) (생략)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대응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아.~타.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③ (생략)

□ 「약사법」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86조의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
 2.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인 경우
 3.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
 5. 동일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 그 밖에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

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사업 등
*주택화재. 생활안전.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인플루엔자.풍진. A.B.C형
간염. 장관염(로타바이러스)등의 예방접종 지원 등.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책임국장제 시행 이후 능력 있는 인재가 직렬에 상관없이 부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렬 확대 및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국장 직렬 조정(안 제3조)
 - 1) 행정국장
 - 가) 현행: 서기관
 - 나) 조정: 서기관 · 기술서기관
 - 2) 경제복지국장
 - 가) 현행: 서기관
 - 나) 조정: 서기관 · 기술서기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 칙 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3항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4항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p> <p>③ 행정국장은 <u>지방서기관</u>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④ 경제복지국장은 <u>지방서기관</u>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p> <p>③ 행정국장은 <u>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u>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④ 경제복지국장은 <u>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u>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8조 관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93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7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7명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2023.8.30.)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등을 확대함(안 별표 1)
 - 1) 선물의 범위 :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포함, 금액상품권 제외
 - 2) 가액 범위
 - 가) 현행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원(설·추석 기간 20만원)
 - 나) 변경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15만원(설·추석 기간 30만원)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029), 이메일(bohng21@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 9. 17.까지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바. 문의전화 : 055-940-3064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 칙 명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4조제3항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가. 축의금·조의금	5만원
	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한조화	10만원
3. 선물	가. 금전, 유가증권 ,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가. 금전,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 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1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 15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비고 [현행]

가. 제1호,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가목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나목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가목의 선물과 같은 호 나목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고 [개정]

가. 제1호,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가목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나목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가목의 선물과 같은 호 나목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대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9. 2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9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별표 1] <개정 2023. 8. 30.>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3년도 제2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2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고
보건소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3명	
	사회복지사		2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과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과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간호사	(필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
사회복지사	(필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공 통	(경력)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공기관 및 병원, 노인시설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근무부서	임 용 예정분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무내용
보건소	간호사	마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	○ 조기검진 및 예방 관리 ○ 치매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맞춤형사례관리 등 환자지원사업 ○ 치매환자 센터 운영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
	사회복지사		2명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근무부 서	인 원	분 야	직 급	임용기간	근무시간	비 고
보건소	3명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년	주당 35시간	
	2명	사회복지 사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보수 수준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1,892	(단위 : 천원)

※ 보수월액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3. 9. 19. ~ 9. 21.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23.9.22.(금)	2023.10.5.(목) 거창군청	2023.10.6.(금)

⇒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6)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 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제출
 -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감 5,000원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임용예정 분야 자격(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전형결과 적임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년 제2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임용 부서		(담당자 기재)		
분야				

연번	제출 목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 [서식1]	
2	이력서 ▷ [서식2]	
3	자기소개서 ▷ [서식3]	
4	직무수행계획서 ▷ [서식4]	
5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7	자격검증 동의서 ▷ [서식5]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서식6]	
9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는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제 응시자 책임입니다.

[서식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기재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3. . . 작성자 : (인)					

[서식4]

직무수행계획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3. . . 작성자 : (인)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